

어장이용개발계획서

(단위: 건, ha)

| ①<br>총 개발<br>적지(適地)<br>면적 | 이미 개발한 어장      |         |         | ⑤<br>총<br>미개발<br>면적 | ⑥(            )년 (            )개발계획 |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| 신청수면의 개발상 제약 사항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⑰<br>개발<br>하려는<br>사유 |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⑦ 어업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| ⑧<br>수면의<br>위치 | ⑨<br>수면의<br>번호 | ⑩<br>건수 | ⑪<br>면적         | ⑫<br>국가<br>공익<br>관련 | ⑬<br>자원<br>보호<br>관련 | ⑭<br>어업<br>조정<br>관련 | ⑮<br>수산<br>법규<br>관련 |                      | ⑯<br>그 밖의<br>사항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②<br>어업의<br>종류 | ③<br>건수 | ④<br>면적 |                     | 종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어업의<br>방법 | 품종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
작성방법

- 1. ①란에는 관할 시·군·구에서 개발하려는 수면의 총 적지(適地)면적을 적습니다.
- 2. ②란부터 ④란까지에는 이미 개발한 어장에서 하고 있는 어업의 종류(정치망어업 및 마을어업)와 건수 및 면적을 적습니다.
- 3. ⑤란에는 관할 시·군·구에서 아직 개발하지 않은 어장(수면)의 총 면적을 적습니다.
- 4. ⑥란의 앞 (        )에는 개발연도를 적고, 뒤 (        )에는 정기 또는 변경 중에서 해당하는 개발계획의 유형을 적습니다.
- 5. ⑦란 중 어업의 방법에는 어업의 종류별로 어업방법을 적고, 마을어업의 경우에는 포획·채취수단을 적습니다.
- 6. ⑧란에는 개발하려는 수면의 위치를 적습니다.
- 7. ⑨란에는 개발하려는 수면의 번호를 차례대로 부여하여 적습니다.
- 8. ⑩란에 개발건수는 각 1건씩으로 하고, ⑪란에는 개발건수에 대한 면적을 적습니다.
- 9. ⑫란에는 「수산업법」 제4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을 검토한 후에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.
- 10. ⑬란에는 보호수면, 수산자원보전지구, 회귀성어류 보호수면 등 수산자원보호와 관련되는 사항을 적습니다.
- 11. ⑭란에는 보호구역 중복, 어장 과밀, 어도 차단, 어장구역 중복, 인근 어장과의 분쟁 예상 등 어업 조정과 관련되는 사항을 적습니다.
- 12. ⑮란에는 어장기점설치 가능 여부, 육지와와의 거리, 수심, 인근 어장과의 거리, 그 밖의 수산에 관한 법령 및 정부정책 등과 관련되는 사항을 적습니다.
- 13. ⑯란에는 그 밖에 신청수역의 개발상 제약사항을 적습니다.
- 14. ⑰란에는 신청수면을 어장으로 개발하려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.
- 15. ⑫란부터 ⑯란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"없음"이라 적습니다.